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(노무비닷컴)

1. 개정시행(예정)일: 2024.09.20

2. 개정 내용

현행	개정 후	비고
계약서 제8조 (전자금융서비스 이용에 따른 기준) ① 제7조에 따른 지급은 수탁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상 지급이체 전문을 수신하여 이루어지며, 이 경우 동 전문은 수탁자의 영업일 09:00-17:00 사이에 수탁자에게 송신되어야 한다. ②~③ 생략	**계약서** 제8조 (전자금융서비스 이용에 따른 기준) ① 제7조에 따른 지급은 수탁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상 지급이체 전문을 수신하여 이루어지며, 이 경우 동 전문은 수탁자의 영업일 00:30-17:30 사이에 수탁자에게 송신되어야 한다. 다만, 추후 수탁자의 상품운용방법 변경에 따라 전문 송신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. ②~③ 생략	제8조 전문 송신시간 변경
제10조 (신탁재산의 운용) ①~⑥ 생략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좌의 수탁잔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는 정기예금으로, 3억원 미만일 경우는 발행어음으로 운용한다.	제10조 (신탁재산의 운용) ①~⑥ 생략 ⑦ 삭제	제10조 신탁재산 운용 제한문구 삭제
제30조 (신탁계약) 이 신탁계약서는 3통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며,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의 신탁증서를 교부한다.	제30조 (신탁계약) 이 신탁계약서는 2통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며,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의 신탁증서(신탁계좌)를 교부한다.	제30조 신탁계약 당시 우선수익자를 특정할 수 없어 생략함

신탁계약 세부사항 <신설>	**신탁계약 세부사항** 제9조 (신탁사무위임계약의 체결) 수탁자는 세부사항 제3조 대항요건 구비와 관련한 일부 사항을 제3자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신탁사무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, 자세한 업무범위 및 방법은 신탁사무위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. 한편, 본건 신탁사무위임계약과 관련한 신탁재산관리자에 대한 보수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지급하기로 한다.	제9조 신탁사무위임계약 체결 반영

3. 기존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여부 : 개정된 내용은 본 개정일 이후 신규, 연장, 갱신 등 약정분부터 적용